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03 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: 강훈식 · 이용빈 · 김윤덕

기동민 · 김원이 · 이소영

한병도 · 김종민 · 고영인

이장섭 · 이규민 · 유동수

이수진 • 윤준병 • 유정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,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, 버팀목자금의 집행 등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나오고 있는 상황임.

그러나 업종별로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부터 방역추이에 따른 상황별 대응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보상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이 방역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
이에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"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"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, 조세 등의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(안 제12조의4 신설).

주요내용

- 가.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,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.
- 나. 집합제한조치로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상당의 금액과 차임,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함.
- 다. 집합제한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 후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경 우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함.
- 라.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4(소상공인 휴업 등 보상) ① 정부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(이하 "조치"라 한다)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(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그 조치 기간 동안(폐업한 경우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)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.
 - 1. 집합금지조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(제2호의 조치 후 자발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가. 조치기간(휴업기간) 동안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결정된 최 저임금액 상당의 금액
 - 나. 조치기간(휴업기간) 동안의 사업장 차임, 조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
 - 2. 집합제한조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
 - 가. 영업제한 형태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「최

저임금법」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

- 나. 영업제한 형태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조치 기간 동안의 사업장 차임, 조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영업제한 형태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휴업 등 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제12조의4(소상공인 휴업 등 보 상) ① 정부는 소상공인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
	집합제한 조치(이하 "조치"라 한다)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(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대하여는 그 조치 기간 동안(폐업한 경우 조치 후 폐 업하기까지)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한다.
	1. 집합금지조치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(제2호의 조치 후 자발적 휴업한 경우 를 포함한다) 가. 조치기간(휴업기간) 동안 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

- 나. 조치기간(휴업기간) 동안 의 사업장 차임, 조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
- 2. 집합제한조치의 경우 다음각 목에 따른 지원
 - 가. 영업제한 형태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 응하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
 - 나. 영업제한 형태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 응하는 조치기간 동안의 사업장 차임, 조세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 원금액, 영업제한 형태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